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78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제출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검토보고·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나백주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 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흡연, 대기오염 등 알레르기 질환 악화요인의 증가와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증가하고 있음. 알레르기 질환은 전 생애 동안 지속되어 삶의 질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 나. 이에 서울시민의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3년(2020.1.1. ~ 2022.12.31.)
- 인 력: 센터장1(비상근), 팀장1(상근), 팀원4(상근)
- 소요예산: 390,000천원/연(국비50%, 시비50%)
- 위탁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및 인증지원
 -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

나. 필 요 성

- 알레르기 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 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제출 사유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¹⁾에 따른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³⁾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임. 시장이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및 인증지원
-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

- 1)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2.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자료 제공
 3. 알레르기 질환 정책개발 지원
 4. 기타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2)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민간위탁 사무 추진내역

가. 민간위탁 사무 위탁 내역

-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동 사무의 위탁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최근 2회차는 서울의료원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공모가 진행 될 예정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08.05.02~'08.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보건복지부 '천식아토피 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의거 지정 위탁 (보건복지부-108, '08.03.11)
2차	'09.01.01~'09.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3차	'10.01.01~'10.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4차	'11.01.01~'11.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5차	'12.01.01~'13.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공개(제한)경쟁 2회 유찰에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
6차	'14.02.07~'16.12.31.	서울의료원	수탁기관 공모에 의한 신규계약
7차	'17.01.01~'19.12.31.	서울의료원	재계약
8차	'20.01.01 부터 최대 3년간	공모예정	공모예정

- 최근 3년간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50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센터장 1인과 상근직원으로 팀장 1인, 팀원 4인으로 구성되어 총 6인 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도별	사업비용	구성	비 고
2017년	380,000,000	인건비 154,802 사업비 192,728 운영비 32,407	국비 50%, 시비 50%
2018년	390,000,000	인건비 176,124 사업비 9,428 운영비 204,448	
2019년	390,000,000	인건비 190,788 사업비 32,882 운영비 166,330	

나. 민간위탁 사무 수행 내역

- 동 사무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및 인증지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목표대비 달성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보다는 매년 하반기에 집중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2019 하반기 자치구 담당자·지역주민 대상 교육 집중 실시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구 분	내 용	추진실적					
		2017		2018		2019.6.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지원	안심학교·어린이집·유치원 관리	99%	691개소	101%	654개소	116%	655개소
	안심학교·어린이집·유치원 교육지원	101%	685회	97%	629회	64%	392회
	안심학교·어린이집·유치원 현장방문	95%	190회	136%	34회	44%	11회
	인증안심학교 관리	184%	46회	260%	39개소	48%	19개소
	인증안심학교 교육지원	216%	108회	164%	82회	75%	30회
	서울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결과보고회	100%	1회	100%	1회	하반기 시행	하반기시 행
	안심학교 유병조사 DB 관리	100%	자료확보	100%	자료확보	진행 중	진행 중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보건소 담당자 및 보건·보육교사 교육 보건소 지원교육, 아토피·천식 화목교실	258%	468건	98%	71회	34%	36회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교육자료 개발	100%	2건	200%	2건	진행 중	-
	교육자료 제공	94%	94,167 건	1,239%	24,791부	83%	12,443부
기 타	센터홍보(SNS 게시물, 언론매체 등)	193%	193/월	333%	333건/월	783%	783건/월
	상담제공(온·오프라인, 전화상담 등)	104%	104건/ 월	102%	102건/월	101%	101건/월
	정책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위원회, 내·외부 회의 등)	140%	28회	100%	18건	59%	10회

-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2017년의 지도점검결과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동 사무의 수행실적에서 지적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구 분	점검일	점검사항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2017	2017.8.7.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등 민간위탁운영사항 전반	사업추진 목표달성 철저	하반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완료
2018	2018.1.16.		없음	없음
	2018.8.23.		없음	없음

- 이는 2019년 예산 집행실적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실적이 50%에 그치는 점은 동 사업의 예산 중 약 48.7%가 인건비 항목임을 염두에 두었을 때 실제 사업의 집행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

구 분	예 산	집 행 률	외부 회계감사결과
2017	380,000,000	100%	적정집행, 불인정금액없음
2018	390,000,000	100%	적정집행, 불인정금액없음
2019	390,000,000	50%	예산집행 완료 후 2020년 시행예정

3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³⁾는 민간위탁 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동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동 사무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동 사무의 수행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안심기관의 교육지원이나 홍보, 운영지원 및 관리, 정책개발의 지원 부분이 주된 역할임에 보건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이 지난 5년간 수행해온 네트워킹 자원 등을 활용함에 있어 비용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 외에 최근 3회에 걸친 지도점검 결과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민간위탁에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임.

3)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4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의 지난 민간 위탁 성과 및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78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흡연, 대기오염 등 알레르기 질환 악화요인의 증가와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증가하고 있음. 알레르기 질환은 전 생애 동안 지속되어 삶의 질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 나. 이에 서울시민의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3년(2020.1.1. ~ 2022.12.31.)
- 인 력: 센터장1(비상근), 팀장1(상근), 팀원4(상근)
- 소요예산: 390,000천원/연(국비50%, 시비50%)
- 위탁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및 인증지원
 -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

나. 필요성

- 알레르기 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7조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 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질병관리과 직업건강팀 정설희 (☎ 02-2133-7614)